
2019년 중견기업계 세제건의

2019. 6



1.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취득 시 중견기업 지방세 감면 확대

□ 관련법령

-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, 동법 시행령 제23조

□ 현황

- 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중소기업은 취득세 60%, 재산세 50%, 그 외 기업은 취득세 및 재산세 35%를 경감(단,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과밀억제권역 내에 설립하는 경우 감면 제외)(19.12.31까지)

□ 문제점

- 기업이 혁신역량을 갖추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활동을 통한 기술력 향상이 절실하나, 중견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투자 역량이 부족한 상황
 - 중견기업의 평균 매출액(1,652억원)과 영업이익(97억원)은 각각 대기업의 17.5%, 13.1%*에 불과하고, 그 중 764개사는 '17년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경영애로를 겪고 있어 적극적인 연구개발 투자가 쉽지 않음
- * 2017년 영리법인 기업체 행정통계, 통계청
- 정부는 국가 R&D 사업 및 각종 투자 세제지원 등을 통해 중견기업의 연구개발 및 투자 활동 촉진 도모
 - 조특법은 '12년 개정 세법에서 최초로 중견기업 개념을 도입한 이후 지속적인 개정을 통해 R&D, 시설투자, 고용촉진을 위한 세액 공제제도에 중견기업 구간을 신설하며 초기 중견기업(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)을 대기업과 차등하여 지원함

- 그러나, 지특법 제46조는 '10년 제정 이후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율을 지속적으로 축소하고 과밀억제권역 외 소재 중견기업과 대기업을 동일한 기업군으로 분류하여 과세함에 따라 중견기업의 조세부담이 가중되어 이에 대한 개선 필요
 - * 지특법 제46조 취득세 감면율 : 모든 기업 100%('10년) → 중소기업 75%, 그 외 기업 50%('14년) → 중소기업 60%, 그 외 기업 35%('16년)
-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 중견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및 연구 개발 활동을 촉진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지역 경제 및 고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중견기업 감면율 상향 필요

□ 건의사항

-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일몰연장 및 중견기업 구간 신설
 - (일몰연장) (현행) '19.12.31까지 ⇒ (건의) '22.12.31까지
 - (구간신설) (현행) 중소기업 취득세 60%, 재산세 50%, 그 외 기업 취득세·재산세 35% 경감
⇒ (건의) 중소기업 취득세 60%, 재산세 50%,
(예) 중견기업 취득세·재산세 50%, 그 외 기업 35% 경감

2. 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중견기업까지 확대

□ 관련법령

-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3

□ 현황

- 위기지역 내 중소기업이 위기지역*으로 지정된 기간** 내에 사업전환 계획 승인을 받고 승인일부터 3년 이내에 전환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50% 경감, 재산세 납세의무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 50% 경감('21.12.31까지)

* 고용위기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(현재 9개): 군산시, 거제시, 통영시, 고성군, 창원시 진해구, 울산시 동구, 목포시, 영암군, 해남군

** 위기지역 지정기간 : 고용위기지역 1년,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2년

□ 문제점

- 최근 국내기업은 노동·환경 규제 강화 및 환율변동·보호무역주의 심화 등 글로벌 경기 변동으로 인하여 대내외적으로 심각한 경영위기에 노출되어 있음
 - 특히,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결정, STX조선해양 구조조정, 조선업 장기침체 등으로 인해 군산·고성·진해 등 위기지역 기업의 경영환경이 악화되어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
 - 위기지역 내 중견기업 59개사의 경우 '17년 평균 매출액 1,724억 원으로 전년 대비 21.5% 감소하였으며 이중 19개 기업은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경영악화가 심각한 상황

< 위기지역 중견기업(59개사) 경영지표 >

경영지표	2016년	2017년
평균 매출액	2,195.3억원	1,724.0억원
평균 영업이익	△6.1억원	△8.5억원

* 중견련 내부자료('18.8월)

- 이에 정부는 위기지역 중소·중견기업에 대해 추가적인 세제지원을 마련하고 '18년 개정 세법에 반영하였으나 지특법 개정안의 경우 위기 지역 세제지원을 중소기업으로 한정하여 아쉬운 상황
- 중견기업은 수·위탁거래를 통해 많은 지역 중소기업과 공생하고 있어 지역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
 -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경우 지역 내 협력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지역경제 활력 회복이라는 제도 취지에 적합하고 정책실익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

□ 건의사항

- 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대상 중견기업까지 확대
 - (현행) 중소기업 ⇒ (건의) 중소·중견기업

3.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일몰연장

□ 관련법령

-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

□ 현황

-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·재산세의 일부를 감면('19.12.31까지)

<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율 >

구 분	사업시행자 (제78조①,②,③)	입주기업(제78조④)	
		신축·증축	대수선
취득세	35%	50%	25%
재산세(5년)	35%(비수도권 60%)	35%(비수도권 70%)	-

□ 문제점

- 산업단지는 부지조성 및 기업 입주·생산 단계에서 생산·고용(취업) 유발효과를 발생시켜 지역경제의 성장 거점 역할을 하며 산업발전 및 경제성장을 견인

- '18년 4분기 총 1,207개 산업단지에 100,786개 업체가 입주해있으며, 산단 입주기업의 고용인원은 약 216만명에 달하며, 특히 비수도권(서울, 경기 및 인천 제외) 소재 산단 고용인원이 131.5만명으로 전체의 61.0%를 차지하는 등 지방 일자리 부족 해소에 크게 기여함

* 2018년 4분기 전국산업단지 현황통계, 한국산업단지공단

- 김해 골든루트 산업단지의 경우, 김해시 제조업 고용의 4.2%, 생산의 7.1%를 차지하고 있으며 김해시 제조업 성장에 대한 산업단지의 기여율은 '14년 16.97%에서 '15년 162.64%로 대폭 증가

*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(김해 골든루트 산업단지를 중심으로), 2018.3, 한국산업단지공단

- 지특법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제78조(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)를 통해 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의 취득세와 재산세의 일부를 감면하고 있으나, 과거 개정을 통해 감면율이 하향*되어 입주기업의 실익이 감소된 상황에서 올해 제도가 일몰될 경우 산단 활성화 저하 우려

* '14년 개정 전 감면율 : 취득세 100%(대수선의 경우 50%), 재산세 50~100%

< 지특법 제78조에 따른 지방세 감면금액>

구 분	감면율 하향 前	감면율 하향 後		
	2014	2015	2016	2017
취득세	7,160억원	4,611억원	3,709억원	4,997억원
재산세	937억원	866억원	852억원	822억원
총 계	8,097억원	5,477억원	4,561억원	5,819억원

* 지방세통계연감, 행정안전부

-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은 지특법 내 기업 관련 세제지원 중 감면 규모가 가장 큰 제도로서 일몰연장 시 기업의 지방 투자를 유인하여 향후 장기적인 지방세수 창출 및 일자리 조성에 기여하는 등 직·간접적으로 긍정적인 정책효과가 예상됨

□ 건의사항

- 산업단지 취득세·재산세 감면 일몰연장